

카피킬러라이트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

문서표절률

2%

확인서 정보

검사번호 : 00073212226

발급일자 : 2020.08.04 15:54

아이디 : lcs7777kr@hanmail.net

닉네임 : 사람님님

검사일자 : 2020.08.04 15:54

검사문서 : 성실납세자 홍보 및 우대방안 연구(8.4).hwp

비고 :

본 확인서는 lcs7777kr@hanmail.net 사용자가 카피킬러에서 표절검사를 수행한 표절분석 결과에 대한 문서로 카피킬러 표절검사 시스템이 자동으로 생성한 자료입니다. 문서 작성 기준이 각 학교,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최종 평가자의 표절평가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표절 검사 상세 결과					
문서표절률	전체문장	동일문장	의심문장	인용/출처	법령/성경
2%	167	0	8	4	40

표절 결과 문서명	성실납세자 홍보 및 우대방안 연구(8.4).hwp
국내 대학원 교육훈련 보고서	
성실(모범)납세자 홍보 및 우대방안 연구 [고려대 정책대학원 조세재정학과]	
2020. 8.	
소 속 : 국세청 성 명 : 이춘식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성실납세의식 조성 및 우대방안 홍보 강화 4	
II. 성실납세 홍보 전략 수립 7	
1. 성실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 제기 7	
2. 성실납세 홍보전략 8	
III. 성실납세자 홍보추진현황 9	
1. 성실납세 기업에 대한 홍보 9	
2. 자영업사업자에 대한 홍보 10	
3. 근로소득자에 대한 홍보 11	
4. 소비자에 대한 홍보 12	
5. 미래 납세자[청소년]에 대한 홍보 13	
IV.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정상 우대 혜택 14	
1. 세무조사 유예 14	
2. 징수유예 · 납기연장시 납세담보제공 면제 15	
3. 모범납세자 증명발급 15	
4.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 운영 16	
5.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이용 16	
6. 인천공항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17	
V. 성실납세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 혜택 18	
1. 철도운임 할인 18	
2. 공항 출입국 우대 19	

3. 세금포인트 제도 20

VI. 요약 및 결론 22

1. 요약 22

2. 결론 28

참고문헌 32

■ 참고사례 33

[부록] 모범납세자 관리 규정 34

그림목차

<그림 II -2> 성실납세자 홍보전략 8

표 목 차

<표Ⅲ-1> 연도별 법인세·부가가치세 세수 현황	9
<표Ⅳ-1> 세무조사 유예 강화	14
<표Ⅳ-2> 납세담보 면제 혜택	15
<표Ⅳ-3> 모범납세자 증명발급	15
<표Ⅳ-4>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 운영	16
<표Ⅳ-5>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이용	16
<표Ⅳ-6>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17
<표Ⅴ-1> 철도 운임 할인	18
<표Ⅴ-2> 공항 출입국 우대	19
<표Ⅵ-1>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요약	24
<표Ⅵ-2> 사회적 우대 혜택 요약	25
<표Ⅵ-3> 세정상 우대 혜택 요약	26
<표Ⅵ-4> 세금포인트제 도내용 요약	27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장기화되고 있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른 수출과 내수시장의 침체로 국가재정 수입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조세수입의 증대 방안으로 성실납세자 구축이 우리의 당면한 과제로 인식되게 되었음

현재와 같이 어려운 현실 여건을 감안하면 사업자의 평균 소득이 과거와 같이 유지되지 못하는 현상에서 성실납세자의 증대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므로 성실납세자에게 글로벌 세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분위기 조성을 하고자 보다 현실적인 성실납세자 홍보 및 우대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홍보 수단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 초청, 고액 납세의 탑 수여, 홍보대사 위촉, 아름다운 납세자 특집방송, 홈페이지 및 블로그, 카카오톡 등 다양한 SNS·온라인 홍보 매체를 통해 모범납세자·아름다운 납세자 공적 등을 홍보하고, 성실한 납세와 사회봉사활동을 해온 아름다운 납세자 공적과 지원정책 등을 자연스럽게 소개함으로써 자긍심을 부여하고, 특히, 성실한 납세로 모범납세자에 선정된 연예인을 국제청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주요세정홍보에 참여토록 함

또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 혜택으로 여태껏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제공 면제, 세무조사 유예,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등주로 세정지원 측면에서의 지원에 주력하였으나, 최근 우리나라의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는 가운데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성실납세자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세정지원 확대 시행 및 사회적 우대방안 마련 등의 적극적인 우대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추가로 모범·성실납세자에게 금융우대,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및 공항 출입국 우대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런 우대

방안은 세정의 지원 측면에서 일반 기업과 차별화된 사회적 우대 혜택으로 모범납세자에게 성공적으로 전파되어 모범납세자 구축에도 도움이 된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끊임없는 홍보와 우대방안을 마련 함으로써 성실납세자의 지위와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우대 혜택을 더욱 강화하여 모범납세자가 세정상 또는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조세정책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 대적으로 필요하다

2. 성실납세의식 조성 및 우대방안 홍보 강화

◆ 「성실납세하는 국민이 진정한 애국자」로서 성실납세자가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고 명예롭고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타겟별 홍보 강화

1 성실납세의 의미

□ 납세는 권리와 의무

○ (세금은 국가에 대한 책임) 납세는 의무이면서 정당한 권리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

-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자신의 몫으로 정해진 납세의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실납세'임

2 성실납세의식 조성을 위한 홍보 강화 필요성

□ 정책홍보방식 개선에 대한 대통령 지시사항 등 반영

○ (대통령 국무회의 말씀) 각부처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지원점으로부터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14.12.29.)

□ 성실납세는 안정적 재정 확보와 조세정책 성공의 기반

○ (자납세수에 기반) 국가재정 수입은 대부분 납세자의 자진신고·납부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국가재정 건전성 유지의 Key는 성실납세임

* 연도별 자진신고·납부세수 현황(조원)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연도별 세수 208.2 195.7 190.2 192.1 180.2

자납세수 188.8 176.8 172.3 177.0 167.4

비율(%) 90.7 90.3 90.6 92.1 92.9

(출처) '16년 발표 국세청 통계연보

○ (세목별 세수실적) '15년 세목별 세수실적은 총 208.2조원으로

소득세 29.1%(근로소득세 28.1조원 13.5% 포함), 법인세 21.6%,

부가가치세 26.0%로 세목별 세수실적 등을 고려하여 홍보

방향 설정

* '15년 세목별 세수실적 현황(조원)

세목 합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기타

세수 208.2 60.6 45.0 54.2 5.0 43.4

비율 100 29.1 21.6 26.0 2.4 20.9

(출처) '16년 발표 국세청 통계연보

□ 복지재정 급증으로 국가재정 수요 증가

○ (복지재정 확보) 지속적인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증가하는 복지재정에 대한 수요를 조달하기 위해 안정적 조세확보는 매우 중요

- 복지확대에 따른 조세부담의 증가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으므로 균형적인 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위해 자발적 성실납세 인식 확산 필요

□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재정수입 확보의 어려움

- (대내외 여건 악화) 장기화되고 있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른 수출과 내수시장의 침체로 국가재정 수입에 어려움 지속
-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춘 홍보방식의 전환 필요성
- (정책홍보 변화 필요성) 생활수준의 상승 등으로 납세자의 의식수준 또한 과거에 비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 납세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가 모바일 등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이용자(납세자) 중심의 정책홍보 방식의 변화가 필요

Ⅱ. 성실납세 홍보 전략 수립

1 성실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 제기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대다수 기업이 성실납세 기업이고 세수 또한 자진신고납부에 기반을 두고 있음으로
- 기업체의 부정적 내용보다는 성실납세 기업의 조명을 통하여 성실납세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행사 및 홍보건의
- (국제행정 개혁위원회)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이자 해답」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성실납세 기업의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
-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홍보 요청
- (유일호 경제부총리 조세일보 15주년 창간 축하, '16.4.7) 성실납세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 요구
-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세정보제공으로 국민의 이해를 돕고 건전한 비판의 목소리 수렴
- (국제행정 운영방안) 국제청 개청 50주년이 되는 2016년을 전기로 삼아 성실납세자 우대혜택 확대 등을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 확립

2 성실납세 홍보전략

<그림 Ⅱ-2> 성실납세자 홍보전략

Ⅲ. 성실납세자 홍보추진현황

1 성실납세 기업에 대한 홍보

Media를 통한 홍보

- (성실납세 홍보) 성실납세 홍보영상물 및 포스터를 제작, 인터넷 배너·지하철 등 다양한 매체 광고를 통해 성실납세의식 확산
- * 납세자의 날(제50회) 및 국제청 개청(50주년) 기념 성실납세 광고
- (정책홍보 방송) KTV방송용 모범납세자·아름다운 납세자 특집 영상 제작을 통해 성실납세 기업이 애국기업이라는 인식 확산
- SNS·온라인을 통한 홍보
- (인포그래픽 활용)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등 세무정보를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홍보
- <표 Ⅲ-1> 연도별 법인세·부가가치세 세수 현황(조원)

연 도 세수실적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수비율

세수비율 2015년

208.2 45.0 21.6

54.2 26.0 2014년

195.7 42.7 21.8

57.1 29.2 2013년

190.2 43.9 23.1

56.0 29.4 2012년

192.1 45.9 23.9

55.7 29.0 2011년

180.2 44.9 24.9

51.9 28.8

(출처) '16년 발표 국제청 통계연보

- (뉴스레터·PCRM) 법인세 신고,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등 기업이 성실납세를 위해 필요한 정보 안내 중심으로 뉴스레터 발송

전광판 등 내부매체를 통한 홍보

- 전국 세무관서에서 설치하여 운영 중인 정책홍보용 문자전광판 등을 적극 활용하여 성실납세 지속 홍보

2 자영업자에게 대한 홍보

Media를 통한 홍보

- (TV 특집방송) 대중 영향력이 큰 공중파 TV 특집 방송을 편성하여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주역은 기업인들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성실한 납세로 국가재정 확보에 크게 기여한 점을 부각

SNS·온라인을 통한 홍보

- (SNS 이벤트) 이용자(방문자)들에게 '성실납세하는 국민이 진정한 애국가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다양한 SNS 이벤트 지속 실시
- (인포그래픽 활용)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해 우리청의 주요 영세납세자 지원정책인 국선대리인 제도 및 영세납세자 지원단 제도 등 안내·홍보

내부매체를 통한 홍보

- (고지서, 안내문 등) 우리청에서 발행하는 각종 고지서, 안내문, 책자 등에 '성실납세하는 국민이 진정한 애국가' 라는 문구를 인쇄·발송

성실납세 지원제도 안내

- (Pre-filled 서비스) 자영업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를 작성해주는 채움 서비스, 모바일 신고 등 성실신고 지원내용 소개

3 근로소득자에 대한 홍보

SNS·온라인 등을 통한 홍보

- (카드뉴스제작) 근로소득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세금정보 및 근로소득자들의 국가재정 기여도* 등을 콘텐츠로 제작하여 홍보

* '15년 우리청 세수실적 208.2조원 중 근로소득세 28.1조원으로 13.5%

내부매체를 통한 홍보

- (홍보 동영상) 일명 '유리지갑'으로 묵묵히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수행하는 근로소득자들을 주인공으로 하여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배포

기타 홍보방안

- (기자단 운영) 근로소득자에 대한 특화된 맞춤형 세금정보 콘텐츠 제작·전파로 그동안 다소 소홀하였던 근로소득자에 대한 홍보 강화
- (조세박물관 운영)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하여 근로자 등 보다 많은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세박물관 프로그램 연장 운영

4 소비자에 대한 홍보

홈페이지·SNS·온라인을 통한 홍보

- (홈페이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간접세 소개와 소비가 경제 활성화 및 경기 회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콘텐츠로 제작하여 홍보

- (모바일앱) '모바일 국세청 앱(App)' 기능 개선 및 콘텐츠 업데이트를 통해 성실납세에 대한 국민적 인식 확산

- (기자단 콘텐츠) 아름다운 납세자·모범납세자에 대한 소개 및 인터뷰 기사 등을 작성하여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 국세청 블로그에 기자단 기사를 등재하고, 기자단 개인 SNS계정(블로그, 페이스북) 포스팅 활용·온라인 확산 유도

기타 홍보방안

- (세금교육 프로그램 운영) 납세자가 직접 참여하는 세금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성실납세의 중요성 및 모범납세자 우대정책 등 소개

5 미래 납세자(청소년)에 대한 홍보

어린이 세금신문제작

- 세금 관련 내용과 어린이 기자단이 직접 취재한 기사·체험수기 등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내용으로 신문제작

지속적인 청소년 세금교육 실시

- 세금 관련 내용을 만화, 글, 학습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초·중학교 세금교과서를 개발·보급하여 학교 교과과정을 통한 세금 교육지

원

성실납세 캠페인송(Song) 공모

- 전국민을 대상으로 '성실납세 캠페인송' 공모전을 개최하여 신뢰받는 국세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성실납세문화 확산
- 세금문예작품 공모전
- 생활속 세금이야기를 글짓기, 포스터, 만화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세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납세가 진정한 애국이라는 올바른 납세의식을 자연스럽게 정립

IV.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정상 우대 혜택

1 세무조사 유예

<표IV-1> 세무조사 유예

우대 혜택 대상 훈격 우대기간

비고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장 표창 이상 3년

(수상일기준) 세무조사 유예 혜택 배제

(조사 순환 대상 법인) 지방청장 표창이하

2년 (수상일기준)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

추천자 중 총리 이상 2년 (선정일기준)

고용노동부 장관 추천 1년

(선정일기준)

■ 국세청장 표창 시 3년간, 지방청장 및 세무서장 표창 시 2년 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제공, 조사모범납세자에 대해서도 5년 간 조사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2 징수유예 · 납기연장시 납세담보제공 면제

<표IV-2> 납세담보 면제 혜택

우대 혜택(세정) 훈 격 우대기간(세정)

비고 납세담보의 면제 혜택

국세청장 표창이상 3년 (수상일기준)

납세담보 면제 (연 5억원한도) 지방청장 표창이하

2년 (수상일기준)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고용노동부 추천자 중 총리 이상

3년 (선정일기준) 고용노동부 장관 추천

2년 (선정일기준)

3 모범납세자 증명발급

<표IV-3> 모범납세자 증명발급

우대 혜택(세정) 훈 격 우대기간(세정)

비고 모범납세자 증명발급

국세청장 표창이상 3년 (수상일기준)

표창이력 (10년간 동시 표기)

지방청장 표창이하 2년 (수상일기준)

민원증명에 수상이력 표기 국세청장 표창이상

3년 (수상일기준) 증명서 상단에

표기 지방청장 표창이하 2년

(수상일기준)

4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 운영

<표IV-4>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 운영

우대 혜택(세정) 대상 훈격 우대기간(세정)

비고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 운영

국세청장 표창 이상 3년 (수상일기준)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이용 서비스 제공 지방청장 표창이하 2년
(수상일기준)

■ 민원접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국 세무서 민원실에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 운영

5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이용

<표IV-5>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이용

우대 혜택(세정) 대상 훈격 우대기간(세정)

비고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개방

모든 모범납세자 3년 (수상일기준)

지방청장 표창이하 2년

(수상일기준)

■ 최대 2일 동안 교육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시설 이용 가능

6 인천공항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표IV-6>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우대 혜택(세정) 대상 훈격 우대기간(세정)

비고 인천공항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세무서장 이상 3년간

(수상일 기준)

■ 2019년 10월 공항을 이용하는 모범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성실납세자 본인(동반자 포함)을 위해 전용 비즈니스센터를 개설함(인천공항 납세지원센터 내)

인터넷 PC, 복합기, 전화기 등 사무기기 및 티 테이블, 음료, 휴식공간 등을 제공함

V. 성실납세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 혜택

1 철도 운임 할인

<표 V -1> 철도 운임 할인

우대 혜택 (사회) 대상 훈격

우대기간 (사회) 제공기관

예산 철도운임 할인 세무서장 이상

1년간 (수상일 기준)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에스알

■ 2020년 2월 한국철도공사 및 SRT를 운영하는 (주)SR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업무상 목적으로 주중 새마을,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와 KTX·SRT를 이용하는 모범납세자에게 열차 승차율에 따라 10~30% 운임 할인을 제공함

2 공항 출입국 우대

<표 V -2> 공항 출입국 우대

우대 혜택 (사회) 대상 훈격

우대기간 (사회) 제공기관

예산 공항 출입국 우대 전용심사대·승무원 전용 보안 검색대 이용

지방청장이상(동반 3인까지) 정부포상, 장관 표창(3년) 국제청장, 지방청장(2년)

법무부 (국내 · 국제공항등)

■ 공항 출입국 우대 심사대 이용 혜택은 지방청장 표창이상 수상한 모범납세자와 '고액 납세의 탑' 수상한 법인 중 희망자를 우대카드 발급 대상으로 법무부에서 추천함

3 세금포인트 제도

1) 개요

① 세금포인트 제도는 납세자의 소득에 따라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여 포인트별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함

② 세금포인트 제도는 납세자의 소득세 납부액을 누적 관리하여 혜택을 제공하여 세금 납부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 특히 "세금을 성실하게 내도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다"는 사회 인식을 없애고 세금 납부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수 있도록 하여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③ 동 제도 시행을 통해 개인의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대부분 소득세가 개인별로 누적 집계되어 관리됨에 따라 자신의 소득에서 얼마만큼의 소득세를 납부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됨

- 이를 통해 향후 사회 기여도를 감안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가 도입 되는 경우 평생 소득세 납부액이 기준으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④ 또한, 동 제도를 통해 납세의무이행에 대한 심리적인 만족감과 성실납세의식을 고취하고자 이를 도입하였음

2) 내용 및 혜택

① 세금포인트 제도 대상자는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개인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급여생활자 · 개인사업자 등을 포함한 모든 개인 납세자가 이에 해당함

- 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이 이에 해당함

② 세금포인트 제도 대상 세목은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사업소득세·기타소득세이며, 법인은 법인세 ·법인세 감면 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임

- 개인의 경우 분리과세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세, 지급조서 제출이 없는 원천징수세액은 제외함

③ 세금포인트 제도 대상 연도는 개인과 법인이다름

- 개인의 경우 2000년 1월 1일 이후부터 부여 시점 전전년도까지 납부한 환급세액을 차감한 소득세 납부 세액에 대해 매년 1회 부여함

- 개인은 2000년부터 소멸되지 않고 포인트가 누적되어 부여됨

- 법인의 경우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 부여 시점 전년도까지 납부한 환급세액을 차감한 법인세 납부 세액에 대해 매년 1회 부여함

- 법인은 개인과 다르게 최근 5년간의 납부실적 만으로 포인트를 부여, 6년이전 부여 포인트는 소멸됨

④ 세금포인트는 기본적으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하되, 자진신고 납부 금액, 고지세액(가산세 포함)으로 차등 구분하여 부여함

- 원천징수되어 납부하는 세액의 경우 자진납부 세액으로 간주하여 소득자 각자에게 부여함

- 체납 납부세액(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제외한)의 경우고지납부세액으로 간주, 환급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감함

VI. 요약 및 결론

1

요약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은 세정상 우대혜택과 사회적 우대 혜택으로 나눌수 있음

대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 금융우대, 출입국시 우대심사대 이용, 납세담보제공 면제 등이 있으며, 선정유형별로 우대혜택이 다름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장 표창 시 3년간, 지방청장 및 세무서장 표창 시 2년 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제공, 조사모범납세자에 대해 서도 5년 간 조사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다만 악의적인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가 있거나 모범납세자가 순환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는 동 혜택에 서 배제함

(금융우대) 금융우대 혜택은 표창 등 수상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다수 금융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대출금리 우대, 각종 수수료 감면, 보증한도 확대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음

(출입국시 우대심사대 이용) 2020년부터는 공항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을 지방청장 표창 모범납세자 까지 확대함

- 또한, 올해 수상자 부터는 국세청장 표창자는 우대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1년 감소하고 지방청장 표창자는 발급일로부터 2년 간 이용 가능하게 됨

(납세담보제공 면제) 훈장 등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간 면제(지방청장이하 수상자는 2년)

- 국무총리상을 받은 노사문화대상 기업은 3년

-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납기연장 ·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제공 면제 부여(세금포인트 차감)

2020년부터 세무조사 · 공항 · 철도서비스도 우대혜택 제공

우대혜택에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추가 운영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순환조사 대상자를 위한 세무조사 시기를 국세청과 협의가 가능하도록 운영함

사회적 우대혜택에 공항 및 철도서비스 혜택을 위해 2020년 2월 한국철도공사 및 SRT를 운영하는 ㈜SR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업무상 목적으로 주중 새마을,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와 KTX·SRT를 이용하는 모범납세자에게 열차 승차율에 따라 10~30% 운임 할인을 제공함 (공항 및 철도서비스 혜택) 이 혜택은 2020년 수상한 모범납세자부터 적용되며 1년 간 시행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표 VI-1>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요약 우대 혜택(세정상) 우대 혜택(사회적) 징수유예 · 납기연장

담보 면제(5억원 한도) 코레일·SRT 철도운임 할인 순환조사 법인에 한하여 세무조사 시기 선택이 가능 공항 출입시 전용 보안검색대를 이용하도록 우대 인천공항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지자체 등의 공영주차장 이용시 무료서비스 제공 성실납세자 수상이력 표시 콘도 요금 및 의료비 할인 전용 창구 운영(모범납세자) 보증심사, 보증지원, 신용평가, 대출금리 우대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이용 고용노동부 우수기업 추천시 가점 적용 자료: 국세청, 「2020년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안내」 p.7., p.25.

<표 VI-2> 사회적 우대 혜택 요약

혜 택 훈 격 기간제 공기관 예산 철도운임 할인 세무서장 이상

1년간 (수상일 기준)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에스알

공항 출입국 우대 전용심사대·승무원 전용 보안 검색대 이용 지방청장이상(동반 3인까지) 정부포상, 장관 표창(3년)

국세청장, 지방청장(2년) 법무부 (국내 ·국제공항) 공영주차장 이용시 무료 서비스 제공

청장이상 1년간 (수상일 기준) 지자체 주차장 등

세외입 일반회계 (경상적 수입증 사용료) 콘도 요금할인(비수기) 청장이상 *임직원 포함

3년간 (수상일 기준) 소노호텔& 리조트의료비 할인 혜택 청장이상

(*임직원 포함, 대구 및 경북은 지방청장이상, 부산 및 경남은 세무서장 이상) 3년간 (수상일 기준) 본청과 협약을 체결한 전국 지정병원

56개소 보험은 제외하고 비보험중 10에서20%p) 노사문화 모범적 실천 기업 선정시 우대 청장이상

3년간 (수상일 기준) 고용노동부

<표 VI-3> 세정상 우대 혜택 요약

혜 택 훈 격 기 간 비고

세무조사 유예 청장이상 3년간 (수상일 기준)

순환조사대상 법인은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 배제되나, 조사 시기는 선택 가능 지방청장이하 2년간 (수상일 기준)

산통부(고용노동부) 추천자 중 총리 이상 2년간 (선정일 기준)

고용노동부 장관 추천 1년간 (선정일 기준) 납세담보

청장이상 3년간 (수상일 기준) 담보제공

면제 한도는 연 5억원임 지방청장이하 2년간
(수상일 기준) 산통부(고용노동부) 추천자 중 총리 이상 3년간
(선정일 기준) 고용노동부 장관 추천 2년간 (선정일 기준)
인천공항 모범납세자 전용비즈니스센터 이용 세무서장 이상 3년간
(수상일 기준) 성실납세자 증명발급 청장이상
3년간 (수상일 기준) 표창이력 동시 표기
(과거 기준10년) 지방청장이하 2년간 (수상일 기준)
수상이력을 민원증명에 표기 청장이상 3년간 (수상일 기준)
상단에 표기 지방청장이하 2년간 (수상일 기준)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개방 세무서장 이상 3년간 (수상일 기준)

<표 VI-4> 세금포인트제 도내용 요약

구분 개인 법인세금 포인트 대상자

납세의무자 전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법인세목 종합·양도소득세 및 원천징수되는 퇴직·사업·근로·기타소득세
법인세 및 감면분 농특세 시점 납부세액 기준

(2000년 1월 1일 이후 시행) 좌동

(2012년 1월 1일 이후 시행) 누적

기간 소멸하지 않고 누적 부여

(2000년부터 시행) 6년 이전 납부실적은 소멸하고, 최근 5년 동안 부여 점수

산정 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100,000원 당 1점 (고지납부의 경우 0.3점)

좌동 (고지분은 제외)

포인트 사용 개념

담보면제금액에 상당하는 세금포인트 차감 (징수유예 · 납세담보제공 면제 혜택) 사용

점수 사용 가능 점수는 1점 이상 금액

면제세금 포인트 x 100,000원 한도금액 연간 5억 원 유예해당기간

9개월을 최장기간으로 함 승인 유예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 간 체납 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 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

2

결론

1) 사회적 우대혜택의 문제점

- (사용혜택 부족) 세금포인트의 경우 납세담보 외 활용처가 없이 세금포인트가 부여된 납세자는 많지만 실제 사용하는 사람은 저조
- (경제적 측면 위주) 모범납세자 제도는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만 우대 혜택이 치우쳐 있어 모범납세자가 예우받는다는 인식 강화 필요
- (납세자인 지도부족) 세금포인트 제도에 대해 홍보가 부족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면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많음
- (법제화 미비)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한 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있지 않아 우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편성 등 어려움
- (선정인원 적음)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는 인원은 연간 1,100명 안팎에 불과해 성실하게 납부하는 대다수의 납세자들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지 못함

2) 사회적 우대혜택의 문제점 보완 및 개편방안

- (사용혜택 확대) 세금포인트로 이용할 수 있는 세정상 우대 혜택(내부적 개선) 및 사회적 우대 혜택(외부기관 협약 등) 대상 확대
- (사회적 예우 강화) 모범납세자에게 경제적 혜택 외에도 사회적으로 예우받는다는 느낌을 제공할 수 있는 우대 혜택 추가 제공
- (체계적인 홍보) 모범납세자 및 세금포인트 제도를 납세자에게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제도 법제화) 「국세기본법」에 성실납세자 우대제도를 추가하고 세금포인트 제도를 「모범납세자 관리규정」과 같이별도 훈령으로 신설
- (선정기준 완화) 선정 기준을 완화하여 모범납세자 선발 인원을 확대하고 선발과정의 투명성 강화로 납세자의 신뢰도 제고

3) 맺음말(방향 제시)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납세하는 것에 대한 보상보다는 납세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한 제재가 모든 국가들의 공통적인 세정상의 특징 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성실납세를 장려하는 제도를 통해서도 국민의 납세의식을 복돋아 세정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제도로써 모범(성실)납세자와 세금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모범(성실)납세자 제도는 사회적으로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수상자 본인에게는 납세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부여하여 성실납세를 도모하는 제도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 [우대 혜택 확대] 세정상 우대 혜택(세무조사 · 징수유예 · 납기연장시 납세담보제공 면제)과 사회적 우대 혜택(철도 운임 할인, 출입국 우대)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자리를 잡아가는 추세이고 제도적으로도 정착되어 가고 있음

반면에 세금포인트 제도는 국세기본법 등 세법이나, 법령(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제도적 한계] 다만 2004년부터 시행한 이후 「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 제77조 ⑥항에 **세금포인트를 부여받은 납세자의 납세담보제공 면제 기준금액** 정도만 규정되어 있음

또한 세금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로 납세담보이기 때문에 포인트 적립은 계속되지만, 사용 비율은 현저히 낮은 상황임
결론적으로 모범(성실)납세자들이 필요로 하는 우대 혜택을 발굴하고 외부기관 연계 등 활용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여 성실납세자에게 실질적 우대혜택이 제공되는 한편, 세금포인트 제도의 경우 납세담보 외 활용처가 없어 세금포인트가 부여된 납세자는 많지만 실제 사용하는 사람은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좀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참고적으로 주요 선진국의 경우 성실납세는 당연한 국민의 납세 의무로 판단하여 별도 우대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참고문헌]

홍범교, 2020, "성실납세자 우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 연구원

국세청, 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제2377호), 2020.7.

국세청, 모범납세자 관리 규정, 2020.5.

국세청, 2020년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안내, 2020.2.

유일호, 경제부총리 조세일보 15주년 창간 축하, 2016.4.

국세청, 통계연보, 2016년 발표전권, 성실납세 우대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 2014.6.

강은호, 성실납세자 홍보를 통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2014.4.

■ 참고사례

국가별 성실납세 관련 제도 호 주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 연체이자, 세무조사 등의 조치는 있으나,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조치는 없음 영국 국 납세자의 세금 납부 편의를 위해

세금공탁제도(CTD)를 운영한 바 있음 프랑스 성실납세자 우대제도는 미운영하며, 조세일반법(CGI)에 근거하여 불성실 납부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법제화함

미국, 호주,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특별한 우대조치보다는 불성실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등을 통해 성실신고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활용하고 있음

(부록)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2020. 5.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모범납세자의 정의, 선정, 관리, 우대 혜택, 사후관리 등을 규정함으로써 모범납세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의 모범납세자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를 통하여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제3조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선정 유형) ① 국세청장은 「국세청 표창규정」 제3조제1호에 따라 매년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개인 또는 법인을 모범납세자(이하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라 한다)로 선정한다.

② 국세청장은 별도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성실하다고 인정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모범납세자(이하 "별도 선정 모범납세자"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모범납세자(이하 "외부기관 추천 모범납세자"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수출 또는 신기술 개발 사업자로서 국무총리 표창(포상)을 받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추천하는 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천하는 자

④ 국세청 소관부서장이 제2항에 따라 별도의 선정 기준을 신설할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국세청장의 결재를 받아 선정한다.

제4조(선정과 관리) ①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는 표창 등을 수상한 날에 별도의 절차 없이 모범납세자로 당연 선정되고 세무관할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이 국세청 전산시스템의 「모범납세자 선정관리」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별도 선정 모범납세자"는 국세청 소관부서장이 자체 기준을 정하여 선정하고 국세청 전산시스템의 「모범납세자 선정관리」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③ "외부기관 추천 모범납세자"는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이 별도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받아 최종 선정하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의 「모범납세자 선정관리」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④ 국세청장(납세자보호관)은 제3항에 따른 선정 결과를 추천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우대 혜택)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 대하여 "별표2"에 따른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관리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별도 선정 모범납세자"에게는 선정일부터 "별표3"의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관리한다.

③ 제3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외부기관 추천 모범납세자"에게는 "별표4"의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관리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별표2", "별표3", "별표4"에서 규정하는 각종 세무조사란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⑤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가 "별표2" 제2호의 사회적 우대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범납세자 증명」을 발급받아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의 우대혜택과 다른 개별규정의 유사한 혜택을 중복하여 적용받는 경우에는 모범납세자에게 유리한 우대 혜택 중 하나만 부여하여 관리한다

⑦ 국세청 소관부서장은 "별표3"의 우대혜택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제6조(우대 혜택 배제) ① 제3조에 규정한 모범납세자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표2", "별표3", "별표4"에서 규정한 세무조사 우대 혜택을 배제한다.

1.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가 있을 때
2. 정보자료(자체 또는 외부)가 접수되어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3. 세법에서 정하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
4. 우대관리기간중 조사대상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는 때
5. 제178조제1항에 의거 순환조사 대상자(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② 국세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7.12.19> 1. 국세청장이 (중략)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략)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하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 추출방식(중략)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우대 혜택을 배제할 때에는 "별표1"의 서식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전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 선정

모범납세자"는 소관부서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른다

1.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중 국세청장 표창 이상의 표창(포상)을 수상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국세청 조사 소관국장에게 요청한다.
2.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중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 조사 소관국장에게 요청한다.
3. "외부기관 추천 모범납세자"에 대하여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요청한다.

③ 제7조에 따라 모범납세자 선정이 취소된 납세자는 취소결정 즉시 제5조의 모범납세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우대 혜택을 배제한다.

제7조(사후관리) ① 모범납세자 선정 및 사후관리 소관은 "별표5"에 따르며, 사후관리 소관부서장은 모범납세자 선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로 정한 사후검증 요건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검증을 실시한다.

② 모범납세자에 대하여 조사, 자료처리 또는 사후검증(이하 "사후검증 등"이라 한다)을 실시한 국세청 소관부서장 및 세무관서장은 모범납세자 사후검증 또는 선정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별표5"의 모범납세자 사후관리 소관부서(검증 책임부서)장에게 "사후검증 등"의 결과를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사후검증 등"의 결과를 통보받은 모범납세자 사후관리 소관부서(검증 책임부서)장은 추가 확인을 거쳐 모범납세자 선정을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제3조제1항의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중 모범납세자 선정 일전의 결격사유(거짓증빙 제출 등)를 확인한 사후관리 소관부서(검증 책임부서)장은 모범납세자 선정을 취소 결정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 전산시스템의 「모범납세자 선정관리」에 입력한 후 표창권자에게 표창 취소를 요청한다.
2. 제3조제1항의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중 모범납세자로서 부적격한 사유를 확인한 사후관리 소관부서(검증 책임부서)장은 모범납세자 선정을 취소 결정하고 국세청 전산시스템의 「모범납세자 선정관리」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3. "별도 선정 모범납세자" 또는 "외부기관 추천 모범납세자"중 모범납세자로서 부적격한 사유를 확인한 사후관리 소관부서(검증 책임부서)장은 모범납세자 선정을 취소 결정하고 국세청 전산시스템의 「모범납세자 선정관리」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모범납세자 사후관리 소관부서(검증 책임부서)장은 모범납세자 취소 결정 즉시 그 명단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고,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배제사실을 해당 납세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한다.

모범납세자 취소 명단을 통보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우대혜택과 관련하여 기 배부한 공항 출입국 우대카드 등을 회수 조치한다.

제8조(유효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9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23년 5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국세청 훈령 제 1886호, 2011. 2. 14.)

이 규정은 2011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세청 훈령 제 2022호, 2013.12.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전훈령의 폐지) 종전의 「모범납세자관리규정」(2011. 2. 14. 국세청 훈령 제1886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국세청 훈령 제 2097호, 2015. 4.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전훈령의 폐지) 종전의 「모범납세자관리규정」(2013.12.18. 국세청 훈령 제2022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국세청 훈령 제2097호, 2015. 4.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전훈령의 폐지) 종전의 「모범납세자 관리규정」(2013.12.18. 국세청 훈령 제2022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국세청 훈령 제2254호, 2018. 4.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전훈령의 폐지) 종전의 「모범납세자 관리규정」(2015.4.27. 국세청 훈령 제2097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국세청 훈령 제0000호, 2020. 5.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기관명

수 신

참 조

제 목 모범납세자 세무조사 승인요청

1. 모범납세자 현황상호

(사업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 번호표창(포상) 선정 연월일 공적

사유 수여 기관

우대 기간 (~)

훈 격

2. 위법인(납세자)이(가)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6조 제1항 제()호에 해당되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 신 기관장

[별표2]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제1호 세무행정상 우대

우대 혜택 대상훈격(우대기간) 소관부서 ○ 세무조사 유예 - 단, 제6조제1항 각호의 사유발생시 세무조사 유예 배제

청장이상(3년) 지방청장이하(2년) 조사국

○ 정기 세무조사 착수시기 선택 - 단, 순환조사 대상자*의 경우에만 적용하며,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사유발생시 혜택 배제 *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78조에 따른 순환조사 대상자(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적용제외)

청장이상(3년) 지방청장이하(2년) 조사국

○ 징수유예, 납기연장 및 제납처분유예 시 납세담보 면제 - 납세담보 면제한도 5억원 청장이상(3년)

지방청장이하(2년) 징세법무국

○ 모범납세자만 이용하는 창구 운영(민원실) 청장이상(3년) 지방청장이하(2년)

납세자 보호관 ○ 민원증명에 수상이력 표기

- 대상증명 : 납세증명서 등 13개 증명, 사실증명(13종) 청장이상(3년)

지방청장이하(2년) 납세자 보호관

○ 모범납세자 증명발급 청장이상(3년) 지방청장이하(2년)

납세자 보호관 ○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세무서장 이상(3년) 납세자 보호관

○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이용 세무서장 이상(3년) 국세공무원교육원

제2호 사회적 우대

- 사회적 우대는 제3조 제1항의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 표창 훈격에 따라 차등하여 우대한다. 다만, 우대기간 등 우대 혜택은 주무기관별로 정하는 바에 따름

우대 혜택 대상훈격 주무기관

○ 지자체 공영주차장(국립공원포함)등 무료 이용 청장이상 각 지방자치단체

○ 콘도 할인 " 소노호텔&리조트

○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시 보증한도 확대 " 신용보증기금

○ 보증보험증권 발급시 우대 " 서울보증보험 등

○ 공항 출입시 심사 우대 " 법무부

○ 노사문화 모범적실천 기업 선정 시 우대 " 고용노동부

○ 대출금리경감 등 금융상 우대혜택 제공 협약에 따름 협약된

금융회사 ○ 의료비 할인 혜택 협약(지정)

지정병원 ○ 주중 철도이용시 운임 할인(코레일·SRT) 세무서장

이상 한국철도공사(주) SR ○ 금융 신용평가시 긍정적인 요소로 반영

"금융기관 및 신용평가회사

○ 모범납세자 전용 신용카드 발급" 신한카드(주)

[별표3]

"별도 선정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 "별도 선정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 혜택은 아래와 같이 부여한다.

유형 우대 혜택 소관부서

○ 조사모범납세자 ○ 선정일로부터 원칙적으로 5년간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조사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조사받

은 과세기간의 다음과제기간 이후 5개 과세기간을 조사선정에서 제외

*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여러 기간인 경우 최종 조사대상 과세기간 기준 ○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성실납세 협약 체결 대상으로 선정가능
조사국

[별표4](신설)

"외부기관 추천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 "외부기관 추천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 혜택은 아래와 같이 부여한다.

우대 혜택 대상자 소관부서 ○ 선정일로부터 우대기간 동안 세무조사 유예 - 단, 제6조제1항 각호의 사유발생시 세무조사 유예 배제
국무총리 표창 이상(2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등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1년) 조사국 ○ 징수유예, 납기연장 및 체납처분유예 시 납세담
보 면제 - 납세담보 면제한도 5억원 국무총리 표창 이상(3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등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2년) 징세법무국

[별표5]

유형별 모범납세자 선정 및 사후관리 소관부서

- 모범납세자 선정 및 사후관리(사후검증)에 관한 소관부서는 아래와 같음

유형 선정부서 사후관리 부서 §3 ①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 표창권자 - 국세청장 표창 이상 :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 지방청 및 세무서장 표창 : 각 관서 운영지원과장 ○ 총괄 관리부서 - 모범납세자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검증(취소)
책임부서 - 세적관리소관과장 §3 ② "별도 선정 모범납세자" ○ 조사모범납세자 - 국세청 조사국장 좌동 §3 ③ "외부기관 추
천 모범납세자"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좌동 「2020년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안내」 국세청(책자) p.7.

「2020년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안내」 국세청(책자) p.7.

「2020년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안내」 국세청(책자) p.7.

「2020년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안내」 국세청(책자) p.7.

「2020년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안내」 국세청(책자) p.7.

「2020년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안내」 국세청(책자) p.7.

「2020년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안내」 국세청(책자) p.7.

「2020년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안내」 국세청(책자) p.7.

「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 제77조.

「2020년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안내」 책자(국세청), p.7

「2020년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안내」 책자(국세청), p.26

2020년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안내. p.25

「2020년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안내」 P.7.

「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 제77조 제6항(납세담보 제공 면제 기준금액 규정)

모범납세자 관리규정(국세청), 2020.5